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Q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지원연령은 몇 살로 확대되었나요?

기존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했던 것이 만8세 미만으로 확대(22.1월~)되었습니다.

Q '22.1월 기준으로는 만8세 미만인데, 종전 자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14.2.10이후 출생아)은 '22년 1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시스템 구축, 정보 현행화 등을 위해 '22.4월에 지급 합니다.
'22.4월에 '22.1~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4.2.1.~'15.3.31. 출생아동)

Q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정보 현행화 필요
(22.1~2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안내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22.1.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신청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방법

방 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지급시기

'22.4.1일부터

* '22.1.~3. 출생아는 1.3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통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60만원→100만원): 신청일 기준, '22.1.1.~

영아수당

2022년 1월부터 신청 및 지급



지원대상

만0~1세 아동('22년생부터)

지원내용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中 택1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양육방식별 신청서비스명

가정양육	어린이집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이용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30만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요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규발급 불필요

지원시기

0~23개월/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ex) 가정양육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서비스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방 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22.1.5일부터 신청 가능

문의사항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